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 1) 제조업체 등 ⇒ 기업(안 제1조·제3조·제4조)
- 2) 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3) 근로자 ⇒ 노동자(안 제1조~제4조)

가) 경상남도 권고사항

나.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1) 29세 ⇒ 34세

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7. 2.~7.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②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 ① 노동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제5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제3조(지원대상)

나. 군 소재 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노동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0년도 예산 20,000천원을 확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